



제31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2.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안건은 2025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제안내용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에 위탁(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
-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 사업 관련 업체, 환경개선 제품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제반 사항 운영 관리
 - 현장 관리·감독 관련 제반 사항 운영
-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나. 위탁시설 개요

- 실내공기질 컨설팅 : 취약계층 이용시설 428개소
 -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시설별 진단 및 유해인자 상관관계(외기상태와 미세먼지 농도 등) 분석

- ※ 측정항목(6) : PM10, PM2.5, CO2, CO, 총부유세균, 곰팡이
-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 8개소
 - 컨설팅을 받은 시설 중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제거를 위한 실내 환경 정비
 - ※ 타부서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 ※ 벽면 등 곰팡이 제거, 누수 벽면 방수 처리 페인트 시공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시공 지원

다. 위탁 기간 : 11개월 (2026. 2. ~ 2025. 12.)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

마. 소요계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72,66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비에 위탁수수료 포함

- 사업량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산출내역	비고
합계	436	72,660	도비 30%, 시비 70%
실내공기질 컨설팅	428	40,660	428개소 × 95,000원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8	32,000	8개소 × 4,000,000원

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이며, 법정규모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음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구 분	검 토 의 견
	○ 위탁사무는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사무이며, 기존 수탁기간과 재계약하고자 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본 사업은 남양주시 전역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임
경제적 효율성	○ 동일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재)경기도 에너지환경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 가능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년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가 가능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공간 환경개선지원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실내공기질 측정 개소수, 실내환경 조성 시설수,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성과측정 가능 (시군종합평가 기준 공급 목표 설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해당없음
총 합 의 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남양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관에 재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사.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026. 2. ~ 12.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성과평가
 - 근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
 - 대상 : 2025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평가 완료(25. 12. 31.)

- 평가 결과

분야	점검항목 (점수)	점검 내용	배 점	점 수
투입	인력 (10)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적정 인력 투입(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10	8
	자원 (10)	· 사업성과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10	8
과정	준수성 (10)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10	8
	노력성 (10)	·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동원 노력	10	8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50	45
활용	피드백 (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10	10
총점			100	87

※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총점 70점이상인 경우 재계약 결정 가능

○ 지도점검 결과

- 근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
- 2025. 4. 2. :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1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
- 2025. 7. 1. :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2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
- 2025. 9. 30. :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3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관련부서 : 기후에너지과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동일 사업에 대한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임.
-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환경관리, 돌봄 기능을 연계한 사업으로서, 기후·환경 정책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한편, 재계약 동의안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87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가능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적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90점 이상의 우수 평가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운영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환경설비 설치·관리와 이용자 돌봄 등 복합적인 업무가 결합된 사업인바, 시설별 관리 수준의 편차 여부, 공기질 개선 효과의 지속성, 돌봄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안건은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재계약 요건 충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위탁 기간 동안 사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과 관리·평가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